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생활체육과장 강영대】

가. 제안이유

새로 조성되는 망원 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을 구립 체육시설 항목으로 추가하고 동 시설의 개인 사용료 등의 범위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구립 체육시설 항목 신설(안 별표 1)
- 2) 개인사용료의 범위 신설(안 별표 2)
- 3) 전용사용료의 범위 신설(안 별표 3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 개정안은 올 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망원동 소재 “망원 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”을 구립 체육시설 항목에 편입하고, 체육시설

사용료 등의 범위를 정하고자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조례의 별표 1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” 항목에 “망원 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”을 추가하고,
- 조례의 별표 2 “개인 사용료의 범위”에 동 시설 사용료의 범위를 10,000원 ~ 18,000원으로 정하고 있음. 책정된 사용료의 범위는 동종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망원 나들목 테니스장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고 2021년 9월 30일 개최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용료 책정이라고 판단됨.
- 이와 관련하여 함께 개정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보면 동 시설의 주간 사용 요금기준을 10,000으로 정하고 있음(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 테니스장의 주간 사용요금은 12,000원임)
- 또한, 조례의 별표 3 “전용사용료의 범위” 역시 인근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, 적절한 사용료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